

2021년 부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 부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5일

부 천 시 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직무내용
청원경찰	3명	부천시 시·동 청사	· 청사 출입 인원, 차량 및 물품 통제 · 민원 안내 및 집단민원 대응 · 청사 방호 및 경비 전반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보 수)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에 따름

2. 법령 근거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및 제4조(임용방법 등)
- 「부천시 청원경찰 규정」 제5조(청원경찰 신규 채용)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국 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
-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면접시험 시행일까지 전역예정자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2021년 4월 4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학 력 : 제한 없음
 - 신체조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적합한 사람
 - 주·야간 교대근무(주말 포함) 및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 위 응시자격 항목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4. 시험방법

-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체력검정 / (2차 시험) 면접시험
- ◀ 1차 시험 (서류전형, 체력검정) ▶
- ▶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서류전형 점수와 체력검정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결정하며, 최종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의 합격자 결정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거주지, 연령 등) 기준 적격여부 및 우대요건 심사

우대요건 배점기준

■ 부천시 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점	2점	3점

※ 2011. 1. 1.부터 공고일까지 총 거주기간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기간 제외)

■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1점	2점	3점

※ 관련분야 경력

- 「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각 3점

■ 무도공인단증

1단	2단	3단 이상
1점	2점	3점

※ 여러 개의 무도단증 소지 시 **최고순위(가장 높은 단) 1개만 적용**

- ※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는 「2021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21-7호) 준용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및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0개))

- (체력검정) 3개 종목, 종목별 10점 만점

- ※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체력검정 위원이 결정하며, 모든 응시자는 이에 따라 체력검정을 진행하여야 함
- ※ 3개 종목 중 어느 하나의 종목이라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1,000m 달리기 : 1,000m를 달린 후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기록을 측정

- ▶ 출발신호에 맞춰 4~8명이 동시에 출발하며, 다른 응시자의 경주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타의에 의한 충돌 등으로 넘어진 경우에는 해당 종목 측정이 종료된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윗몸 일으키기 : 60초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

- ▶ 양발을 30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누운 자세에서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누울 때 어깨, 배치기 등 반동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복근력만을 이용하여 실시

※ 검정 중 센서 오작동 등 응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측정이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의 해당 종목 측정이 종료된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실시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기록 중 높은 기록으로 확정함

▶ **팔굽혀 펴기** : 60초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

- ▣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을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게 유지한 상태로 팔을 굽혀 몸과 매트 간격을 10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하는 횟수를 측정
(여자는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지면에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 각도를 이룬 상태에서 엎드려 손을 짚는다)

체력검정 기준표

■ **남자**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불합격
1000m달리기 (초)	230이내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이후
윗몸일으키기 (회)	58회이상	55~57	51~54	46~50	40~45	36~39	31~35	30이하
팔굽혀펴기 (회)	58회이상	52~57	46~51	40~45	34~39	28~33	23~27	22이하

■ **여자**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불합격
1000m달리기 (초)	290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이후
윗몸일으키기 (회)	55회이상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4이하
팔굽혀펴기 (회)	50회이상	45~49	40~44	35~39	30~34	26~29	21~25	20이하

《 **2차 시험 (면접시험)** 》

- 평정방법 : 각 위원이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 로 평정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평정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미흡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 중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합격(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합격)
- ▶ 면접시험 불참자 및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1. 4. 13.(화) ~ 4. 15.(목) 09:00 ~ 18:00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① 방문접수

- 대리접수 가능, 단체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4. 15.)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편번호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청원경찰 채용담당자)
- 우편봉투 겉면에 ‘2021년 부천시 청원경찰 응시원서’ 표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채용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21. 4. 5. ~ 4. 15.	2021. 4. 13. ~ 4. 15.	서류전형	2021. 4. 19.(월) 전 · 후	-	2021. 5. 4.(화) 전 · 후
		체력검정	2021. 4. 29.(목) 전 · 후	부천종합운동장	
		인성검사	2021. 5. 7.(금) 전 · 후	부천시의회 대회의실	-
		면접시험	2021. 5. 17.(월) 전 · 후	부천시청 만남실	2021. 5. 21.(금) 전 · 후

※ 체력검정은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실시하며 체력검정 당일 09:00까지 본부석 앞으로 집결하여 등록
(우천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별도 날짜 지정·공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면접시험 및 인성검사 세부일정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

○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 무도공인단증 1부. ※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는 기재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1년 5월 22일부터 2021년 6월 2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분은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하시거나, 우리 기관 팩스(032-625-2248) 또는 이메일(addio352@korea.kr)로 제출하면, 방문 수령하시거나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32-625-2252)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5항
4.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년 6월 2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단, 추가합격자 결정을 위해 11월 16일 이후 파기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

7. 응시자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장애인등록증,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증 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요건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승인기관 : 부천원미경찰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체력검정 유의사항 》

- 체력검정 당일 우천 및 기타사유로 인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하며, 별도의 안내가 없을 시 정상적으로 시험이 실시됩니다.
- 체력검정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검정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 체력검정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정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체력검정 응시자는 운동복, 운동화 등 자유로운 복장으로 참여하되, 지병 등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검정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으며, 착용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체력검정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정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검정 중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유의사항 》

- 시험일(체력검정, 면접시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능동감시자, 최근 해외방문자, 의심증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시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1) 모든 응시자는 발열검사 실시 후 반드시 시험장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실시한 후 입실하여야 합니다.
 - ※ 고열 등 의심증상자는 별도 대기실 대기 및 체력검정은 별도 시간대에 실시
 - 2) 마스크 미착용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시험 전 과정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 단, 기록측정 등 체력시험 진행 시에만 마스크 탈의 가능하며 측정 종료 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
 - 3) 시험 종료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부천시 행정지원과(☎032-625-2252)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전 채용절차에 걸쳐 응시자 외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응시자가 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 조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행정지원과(☎032-625-2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0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